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40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최기찬, 김기덕, 김인제,
박승진, 박철성, 봉양순,
서준오, 송도호, 왕정순,
이민옥, 이병도, 이영실,
이원형, 임만균, 정준호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의회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‘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’는 일부 규정에 있어 개인의 자율과 사생활을 심대하게 침해하거나,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을 하는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헌법상 권리인 모성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- 이에 공무원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장내괴롭힘금지를 명확화하여 규정하는 한편, 난임 치료 등의 지원에 있어 모성보호제도를 보완하는 등 지원 근거 규정 보완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시민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로 거듭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나. 임신검진휴가 사항을 규정함(안 제29조제4항 신설).
- 다. 유급 수유 시간 사항을 규정함(안 제29조제6항 신설).
- 라.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공무원의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29조제10항 신설).

마. 여성공무원 및 남성공무원의 난임치료시술 휴가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9조제9항제1호 및 제2호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모자보건법」, 「지방공무원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 의장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9조제3항 전단 중 “수 있으며,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”를 “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,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(乳兒)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

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

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공무원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29조제9항(중전의 제7항) 본문 중 “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”를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8항(중전의 제15항) 중 “3일”을 “4일”로 한다.

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

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2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)

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(난자 채취일에 1일,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난자 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근검과 절약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은 <u>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근검과 절약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<u>제18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</u> <u>의장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<p>제29조(특별휴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<u>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9조(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수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</u></p>

④ (생략)

<신설>

⑤·⑥ (생략)

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.

<신설>

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(乳兒)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.

⑦·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⑨ -----
----- 다음
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
술휴가-----.

<단서 삭제>

1. 여성공무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

가.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2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)

<신 설>

<신 설>

⑧ ~ ⑭ (생 략)

⑮ 재난재해 현장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

나.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3일(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다.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: 총 4일(난자 채취일에 1일,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, 난자 채취일 전날, 시술일 후 2일 이내,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)

2. 남성공무원: 정자 채취일에 1일

⑩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공무원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⑪ ~ ⑰ (현행 제8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)

⑱ -----

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
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
수 있다.

----- 4
일 -----
-----.

문서 번호

2023101500000006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최기찬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5.

회신일 : 2023.10.18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조(특별휴가)제10항의 신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(2호)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같은 조례안 제29조(특별휴가)제10항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공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유사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인력개발과 확인 결과, 서울시에서도 산전·산후 우울증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의 경우 우울증의 단계별 검사비 및 치료비가 다르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공무원의 비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일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 내에서 검사비 및 치료비에 대한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

※ 서울시 유사사업 예산

세 부 사 업 명	산 출 근 거	예 산 액
임신직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	150,000원×100명 ¹⁾ ×5회	75,000천원

(2023년 서울시 인력개발과 예산서 참조)

- 서울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역시 일정 예산 규모 내에서 검사비 및 치료비에 대한 실비를 정산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공무원에 대한 비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
1) 100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추계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박지영

☎ 02-2180-7952
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2023년 '맘 편한 맘' 서울시 직원 산전·산후 건강관리 운영계획

일가정 양립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서울시 직원 임산부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육아, 건강한 직장맘으로의 복귀 지원

〈 추진방향 〉

- ✓ 서비스 이용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**서비스 확대**
- ✓ 市-협약기관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**효율성 제고**

□ 추진개요

- 지원기간 : '23. 1월~12월
- 지원대상 : 서울시 임신 및 출산 직원(본청+사업소)
- **전년대비 주요변경**

구 분	2022년	2023년
산전·산후 서비스 횟수	3회(필요시 추가 서비스)	5회 (필요시 추가 서비스)
산전·산후 건강관리 교육	-	신체적 변화로 인한 불안감 감소를 위해 산전·후 교육(4회) (임신 12주, 임신 28주, 임신 36주, 출산 후)
임신부 의자 대여	총 43대 보유 및 대여 ※ '22년 의자 구매(9개)	총 43대 보유 및 대여
홍 보 프로토콜	-	산전·산후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 프로토콜 제작
운 영 내실화	-	(종사자) 간호사 및 테라피스트 교육 (행정력) 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 제출
예 산	36,000천원	75,000천원 (증 39,000천원)

□ 세부 추진내용

① **방문 서비스** 산전·산후 건강관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

- 대 상 : 임신 20주~출산 후 10주 이내
- 내 용 : 산전·산후 방문 서비스(' 22년 3회 → '23년 5회)
 - (산 전) 임신부의 전반적인 건강관리, 출혈, 불안·우울 스크리닝
진통 구별법, 라마즈 호흡법, 부종·유방관리 등 출산준비
 - (산 후) 출산 후 부종관리, 모유수유, 신생아 발달관리 등
 - (고위험군 관리) 우울 검사 '에딘버러 산후우울증 척도 활용'
 - 우울 고위험군(에딘버러 13점 이상)은 '힐링센터 sympt 및 정신건강의학과 연계'

〈에딘버러 산후우울증 척도 K-EDPS, 총 10문항 (각 3점)〉

점수	0~8점	9~12점	13~30점
범위	정상 범위	상담 필요	치료 시급 전문가 도움 권유
의견	→ 약 85% 산모들이 출산 직후 2주 이내 우울감 경험	→ 일반적 우울보다 좀 더 심각한 편	→ 개인의 의지로 극복 어려워 약물 및 입원 치료 필요

○ 지원절차

구분	1단계 : 서비스신청	2단계 : 산전 방문(3회)	3단계 : 산후 방문(2회)
내용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비스 홍보 · 서비스 신청 (전자메일, 유선)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임신부 건강상태 사정 · 출산 준비 상담 · ※ 추가 방문 필요시 서울시와 협약기관 조율 · 전문 간호사 방문 	→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산후우울증 관리 · 모유수유 및 신생아 건강관리 · 부종완화 마사지 · 테라피스트(마사지사) 방문

- 지원방법 : 전문 간호사 방문, 테라피스트(마사지사) 방문

(중략)

⑤ **운영 내실화**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수행 능력 강화

[종사자 역량강화 교육]

- 교육대상 : 전문간호사 및 테라피스트(마사지사)
- 교육주기 : 연 2회(상·하반기)
- 교육내용
 - (전문간호사) 출산 전·후 건강관리 및 출산 준비, 모유 수유, 신생아 건강관리 등
 - (테라피스트) 출산 전·후 신체변화, 마사지 기법 등
- 교육평가 : 협약기관 자체 교육 후 → 서울시로 결과 제출(반기별)

[협약기관 업무수행 능력강화]

- 운영목적 : 매년 자체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설정
- 개선내용
 - 연간 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 평가 후 서울시로 제출
 - 월 청구내역 제출시 서비스 이용자의 산후우울 검사 결과 첨부

	현 재	개 선
업무수행 능력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청구내역 제출 (협약기관 → 서울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청구내역 제출시 산후우울 검사 결과 제출 (협약기관 → 서울시) • (추가)매년 운영관련 계획수립 및 운영 결과 제출을 통한 사업 평가 필요

협약연장 체결(서울시↔협약기관)

- 서울시 직원 산전·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('23. 3.16.)
- 협약만료일이('23. 12.31.)로 1개월전 연장여부 합의 필요

서비스 이용 비용 지급

- 서비스 이용 명단 및 제공 내역 청구(협약기관 → 서울시) : 매월 5일(限)
- 청구내역 및 증빙서류 확인 후 비용 지급(서울시→협약기관) : 매월 10일(限)